

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

의안 번호	제 3097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0. .
제 출 자 행정복지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발적인 회피의사에 따라 해당 위원의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피 허가 여부를 의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민협치담당관, 김포복지재단,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

- 지방자치법 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
-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(제척과 회피)

나. 회피 허가 신청서 : 붙임 참조

회피 허가 신청서

□ 대상안건 :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

□ 신청인 : 정 영 혜

□ 소속 :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

□ 회피범위 :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

가. 시민협치담당관 소관

나. 김포복지재단 소관

다. 김포문화재단 소관

□ 회피사유

가. 시민협치담당관: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서 김포시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.

나. 김포복지재단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김포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인식개선업 교육을 (주)한국놀이교육협회에서 수행

다. 김포문화재단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김포문화재단에서 이사(비상임)로 근무

□ 근거규정

- 지방자치법 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

-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(제척과 회피)

본 의원은 2022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 및 근거규정에 의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신청인 정 영 혜 (서명)

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귀하